재해상해 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 4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 2항 제 1호에 정한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정한 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 1조 제 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 세 이하 미혼 자녀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2 조 제 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 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 3 에서 정하는 "장해 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 4항에 규정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 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발원 문의사항

- 미국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
- 외국회사의 미국에 진출 현황
  - 연도별
  - 형태별 (법인, 지점, 사무소)
  - 진출목적 (영업, 자산운영)
- 인가기준의 자유화여부
  - 자유화시기 및 내용

맥당구장
T. 565-5939
그린그레스호텔 뒤
최신 · 최고의 시설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가족형의 배우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2%, 가족형의 자녀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8 %로 합니다.

⑧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내지 제 7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 1조 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개시전, 제 1보험기간, 만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 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 7 조, 제 11조 제 2 항, 제 12 조 제 1 항)에는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1 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급여금 지급 기준표

구분 / 장해등급	본 인 형	배 우 자 형	가 족 형	
			배 우 자	자녀(1인당)
2 급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7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7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42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28 %
3 급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5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5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3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20 %
4 급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3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3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8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2 %
5 급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5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5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9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6 %
6 급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0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6 %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4 %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30 호, 1979. 1. 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 번호
1. 철도 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 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E 826 - E 829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류 번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 2 부터 7 까지 중의 신체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7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5 부터 11 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 관절 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5.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중 적어도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팔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6 급	1.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 평생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 일상 생활동작의 제한 "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의 뚜렷한 장해 "

시력이 0.06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 (a + 2 b + 2 c + d)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의 뚜렷한 장해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40 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 손가락의 장해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 발가락의 장해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 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